

「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김진영)

- 법령에 근거 없이 권한을 잘못 부여한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권한을 잘못 부여한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